

"생명의 하나님,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(신 30:19~20, 엠 4:1~6)"

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

수 신 노회장

참 조 서기

제 목 헌법 "정치 제8호 표준서식" 수정 통보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.

1. 제111회 총회(2026.9.15.~17. 도림교회)에서는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, 제21조 1항을 가결하여 이를 공포하였습니다.

2. 위 관련근거인 헌법시행규정 제89조(서식) 3항에 의거하여 헌법 **"정치 제8호 표준서식"의 자** **구**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, 각 노회 및 지교회는 붙임과 같이 정치 제8호 표준서식의 자구를 수정하여 업무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"추대청원서"를 → **"추대보고서"**로 수정

나. "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"를 → **"보고합니다"**로 수정

붙임: <헌법 정치 제8호 표준서식 수정> 통보문. 끝.

총 회 장
서 기

권 위
김 휘



직원 신이재 실장 유수정 총무 백명기 사무총장 최상도 서기 김휘현

시행 행정·재무처-12121 (2026.09.22)

우 03128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(연지동), 5F/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

전화 02-741-4350

전송 02-6008-2982

/ yijae0211shin@pcknet.org

/ www.pck.or.kr

/ 공개

헌법 “정치 제8호 표준서식” 수정 통보

헌법시행규정		
현 행	개 정 문	개정이유
제2장 정치 제21조 [원로목사] 1.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(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)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.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.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. [개정 2012.9.20]	제2장 정치 제21조 [원로목사] 1. 헌법 정치 제27조 8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 과반수로 가결하고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노회(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)에 보고한 후 추대한다. 기간의 계산은 그 교회에 실제로 처음 부임한 날부터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. 예우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서 가결되면 제직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. [개정 2012.9.20]	(표준서식을 변경하는 것임) 제110회 헌법개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, 제21조[원로목사], 1항의 헌법개정(안)에 따라 <u>표준 서식도 수정하는 것임</u>[제111회 총회에서 헌법개정(안)이 통과 되었음] 헌법시행규정 제89조 서식 [붙임 참조] 3. <u>표준 서식</u>은 필요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결의로 수정, 추가 할 수 있다.[2012.9.20.]

(정치 제8호 서식) → 자구수정(안)

원로목사 추대청원서

추대보고서

성 명 : ○○○ 목사

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

목사 임직 연월일 : 년 월 일

목사 임직 노회와 교회 : ○○ 노회 ○○ 교회

목사 시무기간 :

원로목사에 대한 예우 :

첨부 : 원로목사 추대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서

위와 같이 원로목사로 추대하고자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청원하오니 허락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고합니다

년 월 일

대한예수교장로회 ○○ 노회 ○○ 교회
당회장 ○○○ 인

대한예수교장로회 ○○ 노회장 귀하